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 상품심사정책과 자료 제공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주요 내용

###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규정 삭제(안 제17조 등)

(1) 상표법 제43조 등에 상표권의 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출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갱신등록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나.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1) 상표법 제22조의4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불필요한 조문 삭제로 상표법령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 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제2항”을 “제46조의4제2항”으로, “포함한다)·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을 “포함한다) 또는 법”으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의4제2항(법)”을 “제46조의4제2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추가등록출원”으로 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등록료 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 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등록료보전서”를 “특허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를 “자는‘특허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호”로 한다.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86조의23”을 “제86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86조의27”을 “제86조의27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제9조의7까지”를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로, “제58조부터”를 “제58조, 제60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으로,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로”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



록신청”으로,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서 제출”로”, “상표등록출원서·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등록출원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로,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를 ““상표등록출원서·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로,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서”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서류구분】란의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뒤에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한다.

【의견(답변, 소명)내용】앞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뒤쪽)의 1. 서류구분 및 관련규정의 직권보정에 관한 의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상표법」 제24조의3
----------------	--	--------------

기재요령의 6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6.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

가. 【제출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작성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다.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리고,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의 다음 줄에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만든 후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해당 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만을 적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직권보정 사항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 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1번과 3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때의 기재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1)번 사항)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3)번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상표유형】란의 □색채상표 앞에 '□일반상표'를 추가한다.

(뒤쪽)의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의 상표등록변경출원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상표등록변경출원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 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표법」 제1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
----------	--	--------------------------------

기재요령의 10. 【상표유형】의 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중 어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수수료】 개 상품류구분 원(기재요령 제7호 참고)로 수정한다.

기재요령의 7.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품류구분의 개수 및 이의신청서 제출시 납부하는 수수료금액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1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을 상품분류전환등록서로 변경하고, (앞쪽)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개신등록제외대상(개신등록분할대상】란을 삭제한다

【수수료】란의 【출원료】부분을 【신청료】로 변경한다.

(뒤쪽)의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서식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구 分	관련규정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표법」 제46조의 2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상표법」 제46조의 3

기재요령의 5.를 삭제한다.

7. 【전환등록대상(전환등록분할대상】란의 가.를 삭제하고 나.를 가.로 하며, [예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1]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구 한국상품분류(‘98. 3. 1. 이전의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잡수용 장갑,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인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시 등록원부상의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동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상품분류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등록분할대상】란의【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란은 원신청서가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전환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합니다. 다만, 2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8. 【수수료】란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할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료】란에는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신청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ko]

###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조의5(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 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	제 2조 (부 적 법 한 출 원 서 류 등 의 반 려 ) ①

현 행	개 정 안
<p>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25조, 법 제43조, 법 제46조의2, 법 제47조, 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기タ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p> <p>3. ~ 13. (생 략)</p> <p>14.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인 경우</p> <p>15. 법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p> <p>15의2. ~ 17. (생 략) ②~⑤(생 략)</p> <p>제12조(변경출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 략)</p> <p>제13조(심사의 순위)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p>	<p>존 속 기 간 갱 신 등 록 신 청</p> <p>1. (현행과 같음)</p> <p>2. 존 속 기 간 갱 신 등 록 신 청</p> <p>3. ~ 1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5. 존 속기 간 갱 신 등 록 신 청</p> <p>15의2. ~ 17. (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p> <p>제12조(변경출원) ①</p> <p>지정상품</p> <p>②(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 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li> <li>2. 상표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③ 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li> <li>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li> </ol>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p>	
<p>제14조(의견서)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 략)</li> </ol> <p>제14조의5(거절이유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li> </ol>	<p>제14조(의견서) _____</p> <p>----- 제 46조 의 4제 2 항 _____ 포함한다) 또는 법</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5(거절이유통지서 등) ①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p> <p>----- 제 46조 의 4제 2항 (법</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p> <p>3. · 4. (생 략) ② · ③ (생 략)</p> <p>④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4조의7(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 등의 회복)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등록료 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제1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제1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제1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담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p> <p>③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상표권</p>	<p>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추 가 등 록 출 원-----</p> <p>제14조의7(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 등의 회복) ----- 「특허 등록령 시행 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의 납 부서-----</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 16조 (상 표 권 의 존 속 기 간 갱 신 등 록 신 청 서 등) ----- 존 속 기 간 갱 신 등 록 신 청 ----- 자는 「특 허 등 록령 시 행 규 칙」 별지 제 16 호 서 식 의 납 부 서 에 다 음 각 호-----</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중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3조의3(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가 포괄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p>	<p>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 제86조의 2 3 제 1 항</p>
<p>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생 략)</p> <p>② 법 제86조의27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를 말한다.</p>	<p>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 86조 의 27제 1 항</p>